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-41호

#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 18.

##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# 1. 처분대상자

○ 성 명: 진*민((주)아신산업 제조관리자)

○ 소재지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-1

### 2. 처분 사항

○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함

※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

### 3. 처분 사유

○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

- 제조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

### 4. 근거 법령

○ 「약사법」 제37조의2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4조

○ 「약사법」 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차목

### 5. 고지 사항

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: 042-480-8707, Fax: 042-480-8715, 이메일:arang1004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